

서울대학교법 제정의 타당성

윤정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1. 서 론

서울대학교법 제정에 관한 연구가 일 반에 공표되기 전부터 서울대법(안)에 대한 반대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다. 어떤 사람은 서울대 이기주의, 선민주의, 망국론, 폐교론까지 들고 나왔다. 서울대만 특별지원을 받으려고 서울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세계 800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은 서울대 교수들의 자질과 노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까지 하였다. 마치 서울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고, 타대학

발전에 저해되는 일을 하면서 특별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믿고 있는 듯하다.

이는 다분히 서울대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성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싶다. 서울대인들이 호된 비판을 받을 만큼 우매한 집단은 결코 아니다. 합리적·합법적·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지성인들의 집단이다. 국가 사회의 장래를 걱정하며, 세계적·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학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자임하고 있는, 올바르게 가치판단을 할 줄 아는 집단이다.

서울대가 제안한 법안은 '서울대학교 설치법'이지 '서울대학교 특별법'이 아니다. 다른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보다 특별한 대

◇… 이번 호의 지상토론은 최근 대학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인 '서울대학교법' 제정에 대한 찬반 논의를 담았습니다. 이 두 편의 글은 '96년 5월 3일 서울대 총장이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서울대의 발전 방안이 보장된다면 국립대학교법을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기 전에 짐작된 글입니다. 편집자…◇

우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서울대학교 설치법'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대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대중매체에서도 '서울대 특별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서울대가 타대학에 비하여 결코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대가 세계 대학 중 800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서울대에 대한 모독이며, 서울대의 자존심을 크게 해치는 표현인 것이다. 어느 누구도 서울대가 세계의 대학들 중 몇 등이나 될 것인가를 비교·연구한 바도 없거니와 국제간에 대학의 순위를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더구나 확실한 자료 없이 한 대학 교수의 자질에 대하여 활가활부하며 문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4월 12, 13일 양일에 걸쳐 서울대에서는 학내·외 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서울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청회의 목적은 서울대법 연구진에서 연구 제시한 '서울대학교 설치법(안)'에 대한 학내·외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자는 데 있었다. 대중매체에서는 학내에서도 서울대법(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 서울대의 19개 단과대학(원)에서 1명씩의 대표가 토론에 참석했는데, 그 중 1명만이 기초학문이 경시되는 감이 있다는 염려의 의견을 피력했을 뿐 참여자 모두가 서울대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하여 찬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외부 인사로는 서울대 폐교론을 주장했던 인사와 타국립대학 총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나, 서울대법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 설치법'으로 통합해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제시하였다. 반대의 의견보다는 서울대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싶다.

서울대에서 연구·제시한 서울대법(안)은 결코 최종적인 법(안)은 아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성을 바탕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서울대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대법 제정 연구진의 일원이었던 필자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서울대법 제정의 필요성, 서울대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외국 대학의 법적 근거와 운영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주로 서울대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

2. 서울대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대학원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은 '서울대학교 발전 10개년 계획'(1979)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이후 현재까지 재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강조되어온 서울대의 핵심적 발전 목표이다.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1995)에서는 국제 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을 장기 발전 목표로 제시하였다. 국제 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이란 학문의 기초이론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교수요원·연구요원

등 고급두뇌를 자력 생산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학문 분야 중 절반 이상의 분야에서 세계의 해당 분야 상위 20위권의 대학에 필적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와 같은 대학 체제의 전환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므로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에서는 서울대학교법의 제정안을 수립·제시하였으며, 그 후 1990년에는 서울대학교법 제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법(안)을 연구·제시함과 동시에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에 관한 연구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는 '서울대학교법 제정에 관한 연구'에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재검토하고, 선진 외국의 대학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였으며, 현행 교육법령과 현행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법(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서울대법 제정은 서울대가 과거 10년간 지속적으로 연구·추진해온 일관된 활동인 것이다. 서울대가 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국가발전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

한국 사회는 지금 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변혁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외적으로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자생력과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히 요청되고, 내적으로는 전근대적·근대적·탈근대적 가치관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도덕적·문화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세계 무역 체제의 환경에

서 교육시장도 조만간에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21세기의 인류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변모해 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학은 독자적인 문화·지식·기술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대내·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즉, 질 높은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국가의 잠재력을 갖추고 대내적으로는 정신적·물질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무릇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학이 그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배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서 발전한 예가 없다. 미국이 오랫동안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미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학문과 기술에서 종속적이고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는 한, 인류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세계사의 전개에 참여하는 것은 허황된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학 개혁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2) 대학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 추진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학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즉, 모든 대학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육하는 획일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

여야 한다. 대학의 문을 넓게 열고 교육 내용을 다양화·전문화해야 하며, 대중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식생산을 위한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대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각 대학이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저마다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때, 이러한 대학의 임무가 모두 충실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대학들은 주로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고 보급하는 일에 안주해 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생산하고 고급인력을 양성·공급함과 동시에 급속히 팽창한 대학 인구로 인한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대응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 대학은 그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양화·특성화되어야 한다.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대학들은 이제 학사교육에 중심을 두는 대학, 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대학,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등으로 다양화 특성화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학교육 개혁의 기본 방향을 고등교육 개방화, 교육방법 혁신, 평생교육 강화의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3)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전환

이제 서울대는 새 시대가 부과하는 임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감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시도해야 할 때이다. 서울대는 연구와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여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첨단지식의 생산과 민족 고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학술연구 인력과 각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대학으로 특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대는 타대학과의 협

력은 물론 산학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을 사회에 보급·확산하며, 국가 당면과제의 해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족과 국가 발전에 봉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대는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현행의 학사과정을 통합 조정하고 기존의 단과대학을 대학원 단계로 전환하는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학사과정 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3. 서울대법 제정의 필요성

현행 교육법 체제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당면한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새로이 제정되어야 하는 법과 제도는 대학의 특성화를 보장하고 대학이 적응력,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난 2월 9일에 교육관계 법령체계 개편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한 법률에 성격이 다른 법 내용이 혼재된 것을 분리하고, 교육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하여 전면 개정하며, 사회교육법의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등교

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각 대학이 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인 설치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울대가 새로운 시대적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사과정 교육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는 현행 교육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대학교 설치령 아래에서는 연구중심대학 및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의 체제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1979년부터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그 실현을 보지 못한 것은 바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교육법 체제상 제도적 경직성과 획일성 및 재정 운용의 제약이 펼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는 서울대학교의 특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자율성 확보에 결정적인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과 연구는 본질적으로 가치 창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외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거부한다. 외국의 연구중심대학들이 정부로부터의 간섭과 통제 없이 각 대학의 법이나 헌장에 따라 연구와 교육 활동에서 자율권을 마음껏 향유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대학의 자율권은 인간의 기본권과 같은 수준에서 존중되며 보장되고 있다.

서울대의 체제 전환과 자율성 확보를 가로막고 있는 주요한 법적·제도적 한계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교육법은 학사과정 교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구중심대학·대학원중심대학의 설치 근거가 결여되어 있고, 연구중심대학·대학원중심대학에 적합한 교육·연구 조직 및 행정조직, 학사관리 체

제, 인사관리 체제 등을 마련할 수 없으며, 예산회계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근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1조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의 차원에서 대학의 학사, 인사, 운영 및 재정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즉, 대학의 자율성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정하는 명령에 의해서 보장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제정한 상위 차원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에 대한 기본상식이 있는 사람은 서울대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회의를 갖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의 부속병원이었던 서울대학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들은 국립대학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데 국립대학 교 병원들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큰 집은 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작은 집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이외의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들은 모두 자체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세무대는 세무대학설치법, 경찰대는 경찰대학설치법, 한국과학기술대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육·해·공군사관학교는 사관학교설치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국가 수준의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각각 자체의 법적 근

거를 가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법,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등이 그 예이다. 교육관련 기관들도 역시 자체의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대한교원공제조합법, 대한민국학술원법, 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장학회법,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그 예이다. 타부처 산하의 대학기관과 연구기관들, 교육관련 연구기관과 단체들은 각각의 독립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데도 대학은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 왜 국립대학은 각각의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자국의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설치근거를 두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은 국립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사립대학은 사립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비록 모든 국립대학이 동일하게 국립학교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각 대학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 부여하기 위하여 국립대학특별회계법을 마련하여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은 각각 '옥스퍼드대학법'과 '캠브리지대학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고등교육 체제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의 고등교육 체제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립대학의 경우를 보면,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은 매사추세츠 주법에 근거를 둔 법인법에 따라 주의회가 하버드 대학헌장과 MIT 대학헌장을 제정하고, 각 대학은 자체 헌장에 따라 주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대학의 자율권은 매사추세츠 주법이 명문 규정을 두고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다. 비록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보조를 받고 있지만, 대학은 이들로부터 전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주립대학의 경우를 보면, 미네소타 대학은 주현법에 의거하여 주의회가 제정한 대학헌장에 따라 주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UCLA는 주의회가 제정한 대학헌장에 의거하여 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주현법은 캘리포니아 대학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캘리포니아 대학 이사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법과 서울대학교 설치령은 대학 자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현법 아래에서 제정된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크게 미흡할 뿐 아니라 부적합하기까지 하다. 서울대가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그러한 법률에 의하여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서울대법(안)의 구성과 주요 골자

서울대학교법(안)은 서울대학교설치법(안)과 동시행령(안), 서울대학교특별회계법(안)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학교설치법은 총칙, 연구와 교육, 운영, 보칙의 4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한 서울대학교의 설치를 법률에 의한 설치로 승격시켰

고, 제2장에서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및 교육조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평의원회,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교직원의 임용 등과 같은 서울대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다. 서울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안)은 설치법에 의해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특별회계법(안)은 대학 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시장 개방과 경쟁 도입에 따른 재정 확충의 극대화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서울대학교설치법(안)의 주요 골자만을 간략히 소개한다.

1) 대학원과 학사교육원

서울대가 연구중심 및 대학원중심대학이 되기 위하여 대학원이 학사과정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단과대학의 부설기관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현재와는 반대로 석·박사과정을 주축으로 연구활동이 중심이 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석·박사과정의 연구·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학문 분야별로 대학원을 설치하고, 학사과정 교육은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학사교육원을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 현재 각 대학의 학과, 학부, 부설연구소 및 부속시설을 해당 대학원에 소속시키고, 교수와 연구원도 각 대학원에 소속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체제는 하버드 대학이나 동경 대학 체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은 1개 대학(University College)과 9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학원은 대학본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하버드 대학은 연합대학(United Schools)이라고 표

현하기도 한다. 각 대학원은 대학원별 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설치·운영하고, 대학별로 학생 정원이나 선발 기준을 결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며, 등록금도 대학별로 책정하는 등 각 대학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University College의 1학년은 교양과정으로서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2학년이 되면서 5개의 학문 영역을 선택하게 된다.

동경대의 경우는 9개 학부와 1개 대학, 11개 대학원, 12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제3캠퍼스에 4개의 대학원을 설립하게 되면 대학원의 수는 15개가 된다. 교수들은 모두 대학원이나 연구소에 소속되며, 대학생은 6개의 학문 영역으로 입학하여 교양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 중반에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경도 대학의 경우는 10개 학부, 10개 대학원, 13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들이 대학원 소속으로 되어 있다.

2) 학술정보원과 민족문화원

학술정보원은 연구중심대학 체제의 핵심적인 기구로서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서울대가 한국의 대학, 세계 대학으로서 인류 사회에 기여할 첨단 지식을 효과적으로 축적·배양·전파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학술정보 자료를 수집·분석·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첨단 학술정보센터 설립과 대학별로 전문 분야에 대하여 특성화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교육개혁 방안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도서관을 전산화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한다.

과거 도서 중심의 자료를 취급하던 도서

관과 비도서 자료와 전산기능을 담당하던 전산원을 실질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종합적 연구·교육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학술정보원의 핵심이다. 따라서 현재 형태의 도서관과 전산원은 발전적으로 개편되어 정보화 시대에 유연하게 적응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가진 학술정보원으로 통합하게 된다.

민족문화원은 여러 학문간의 협동을 통하여 한국학의 진흥과 통일문제 연구, 그리고 해외에서의 한국학 전파를 위한 중심적 활동을 하며, 대학내의 문화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세계의 일원으로 우리나라도 문화교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개방적인 자세로 임하여 민족의 정신적 지평을 넓히고 문화 활동을 다양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족문화 진흥의 전략은 긴 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민족통일의 문제에 대한 전망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통일후 동질문화를 이루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분단체제로 인해 형성된 이질성의 정도를 연구·점검하며, 민족재통합을 위한 전체적인 방안을 수립·제시하는 것도 민족문화원의 주요 기능에 포함될 것이다.

3) 평의원회

현행 교육법 제117조는 각 대학의 심의기구로 평의원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대법에서는 이 평의원회를 의결기구로 격상시켜 설치하고자 하였다.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는 서울대의 기본조직·운영, 지원·육성, 예산·결산, 법령·학칙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의결사항으로 부총장의 임명에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에는 의결기구

가 없고 단지 집행기구만 있는 실정이다. 편의상 학장회의가 의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학장회의는 집행기구에 속하는 것이다.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교수회의가 의결기구이고 학장단이 집행기구로 되어 있으나, 서울대학 전체로서의 의결기구는 없다. 서울대학교 교수회의라는 것이 없으므로 교수협의회가 의결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라고 할 수 있고, 또 1,400여 명으로 구성된 회의체가 의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버드대에는 법인 이사회(Board of Corporation)와 감독자 이사회(Board of Overseers)의 두 개의 통치기구가 있다. 전자는 학외인사 7인으로 구성되는데 대학의 집행위원회로서 재정과 사업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후자는 하버드대 졸업생이 선출한 30인으로 구성되며, 법인의 활동에 대하여 자문하고 승인을 한다. MIT대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법인 이사회이며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네소타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대학 이사회(Board of Regent)이고, 이사는 주의회에서 선출한 사회각계 대표 12명(학생대표 1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주요 기능은 총장 선출, 예산·결산 승인, 대학의 주요 인사 임면, 학생납입금 수준 책정 등이다. 캘리포니아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대학 이사회이며, 이사의 수는 40~50명으로서 주지사가 임명한다. 캘리포니아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9개 대학 중 하나인 UCLA는 자체의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동경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평의회로서 총장을 위시한 학내 인사로서 구성하고 학칙, 예산·결산, 학과

와 연구소 설·폐, 학생수, 교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경도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대학 회의(University Council)로서 총장, 연구소장 등 학내 인사로 구성하고 있다.

4) 복수부총장제 및 특별임용교수제

서울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화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와는 달리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제1부총장, 제2부총장, 제3부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복수부총장제는 서울대가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전환하면서 대학의 기능이 보다 다양화되고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또다른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3인 이내로 두도록 하였다.

하버드대는 총장 밑에 1명의 교무처장(Provost)과 5명의 부총장을 두고 있으며, 미네소타대는 총장 밑에 3명의 처장과 4명의 부총장을 두고 있고, 동경대와 경도대는 2명씩의 부총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의 대학들은 대부분이 5명의 부총장을 두고 있다.

교원의 정원은 정부의 공무원 정원 규정 및 정부 재정의 제약 때문에 증원이 어려우므로 서울대의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로 특별임용교수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별임용교수에는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임용하는 기금 교수, 산학협동을 목적으로 기업체로부터 한시적으로 파견 또는 겸직되는 산학협동 교수, 국내·외 대학 및 교육·연구 기관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객원 교수 등이 있을 수 있다.

5) 특별회계제도 도입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학교

교육도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환경을 제공하여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댓가를 향유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데, 대학 특별회계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일반회계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담당하고, 특별회계는 대학의 특성화를 살리는 활동과 연계된 비용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학간 균형과 차별성이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수입을 그 대학을 위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자구 노력을 촉진하고 대학 재정의 자율성을 증대함과 더불어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충당하게 함으로써 학교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특별회계의 성공적인 도입은 앞으로 초·중등 재정으로부터 대학교육 재정을 분리시켜 대학 특별회계를 성립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립대학이 재정 운영에서 최대한의 자율권을 향유하도록 하고 있다.

5. 결 론

서울대법(안)은 서울대가 오래 전부터 연구·검토해온 것이며, 법 제정은 서울대의 숙원사업이다. 서울대법은 서울대만이 다른 국립대학보다 특별한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법정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대가 설치·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연구·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 대학

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교육기관들 중에도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학들은 거의 모두가 자체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대학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은 대학을 철저히 통제·관리하겠다는 전근대적·관료주의적 발상이며, 교육행정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학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그래서 우리의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의 역량껏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대학의 설치근거를 령의 수준에서 법률의 수준으로 승격시켜야만 한다.

이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립대학이 다함께 공동전선을 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대학 설치의 법적 근거가 법률로 승격될 때 한국 대학들이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립대학에서는 서울대법(안)을 반대하거나 차제에 서울대법과 통합하여 국립대학설치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기보다는 각 대학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대학설치법(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학들이 관할권을 벗어나게 되면

대학에 대한 권한이 크게 감축된다는 생각보다는 대학이 발전해야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21세기의 국가발전 목표인 문화 선진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대학 설치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현재까지 잘못되어 있던 대학에 관련된 법적·제도적인 체계를 올바르게 확립하고 대학을 지원·육성한다는 입장에서 대학설치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서울대는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도록 국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두뇌를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가 이러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서울대법이 이번에 기필코 제정되어야 한다. 필자는 서울대법의 제정이 한국 대학의 발전을 10년은 앞당길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

윤정일/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대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실장과 연구위원, 교육개혁심의회 및 교육정책자문회의 전문위원,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교육행정학원론』, 『한국의 교육정책』, 『교육의 이해』, 『교육재정학』 등이 있고 지방교육자치, 교육재정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